

증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[2003. 12. 15 규칙 제11호]

개정 2005. 4. 22 규칙 제 82호
개정 2007. 3. 26 규칙 제117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개정 2008. 3. 7 규칙 제135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개정 2008. 8. 6 규칙 제140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1. 1. 24 규칙 제178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3. 11. 8 규칙 제230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5. 2. 13 규칙 제263호
일부개정 2016. 12. 30 규칙 제3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전부개정 2019. 10. 4 규칙 제361호
일부개정 2020. 12. 29 규칙 제399호
일부개정 2022. 2. 4 규칙 제414호
(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,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2. 4>

제2조(대행 및 대리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증평군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
<개정 2020. 12. 29, 2022. 2. 4>

1. 미래기획실장
 2. 행정복지국장
 3. 경제개발국장
 4. 「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직제 순에 따른 각 부서의 장(담당관,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② 실장·국장, 각 부서의 장, 읍장·면장이 결원·출장·그 밖의 사유(이하 “사고”

라 한다)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20. 12. 29>

1. 실장·국장: 실·국의 직제 순에 따른 부서의 장(하위 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장)
2. 각 부서의 장: 해당 부서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
3. 읍장·면장: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
가. 부읍장·부면장
나. 읍·면 직제 순에 따른 팀장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20. 12. 29>

② 각 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 및 읍·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20. 12. 29>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및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부칙(2019. 10. 4 규칙 제361호 전부개정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29 규칙 제399호)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2. 4 규칙 제414호, 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